

법을 알고 불이익을 당하지 말자 (2)



글 / 전 해 성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전력기술 관리법의 별칙규정 (1)

2. 전기공사업법의 별칙규정 (2)

3. 전기사업법의 별칙규정 (3)

III. 결 론

2. 전기공사업법의 별칙규정

가. 법 제46조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종류별로 통상산업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하고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3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 경과후 계속하여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시행령 제5조(공사업면허의 공고 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면허할 공사업의 종류·면허 신청기간·면허신청대상 및 면허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사업을 양도, 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시행규칙 제9조(공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인가 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합병 인가 신청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3조제1항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3. 면허증 및 면허수첩
 4.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
 5. 전기공제조합의 의견서(제1종 공사업에 의한다)
 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양도·양수인

- 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85. 1. 29 동자령 75)
 2. 삭제(85. 1. 29 동자령 75)
 3.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제3조제1항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4. 면허증 및 면허수첩
-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관련 규정 앞에서 설명)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또는 제10조의 규정(관련 규정 앞에서 설명)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 (4)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은 공사업자가 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② 제3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자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그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건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 ※ 시행규칙 제16조(영업의 정치 처분사유) 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의 사유는 [별표 1]과 같다.
- (5)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 나. 법 제47조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공사업자는 전기 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한 자

※ 시행령 제17조(시공관리의 기술적 제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2) 법 제19조에서는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관련 규정 앞에서 설명)의 전기기술자 중에서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하여 전기공사의 현장에 배치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책임전기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공사업자는 그 수급한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한 자

(4)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재산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장부서류와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시행규칙 제19조(공사업자의 실태보고)
① 공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 자본금, 공사용시설, 장비 및 공사실적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서의 확인을 위하여 협회 및 공사업자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법 제44조에서는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도급인이 그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전기공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한 자

(6) 법 제45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에 관한 면허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의 위원 및 협회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공사업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한 자

(7) 법 제39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한국전기공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한 자

다. 법 제48조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 시행규칙 제10조(공사업의 상속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는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이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형식상의 대표자 1인을 상속인 전원연서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서류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4. 면허증 및 면허수첩

(2)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공사업자가 그 면허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① 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파산판재인 ② 공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③ 공사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이외의 이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 ④ 공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는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3) 법 제21조에서는 “전기기술자는 2개 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한 자

(4) 법 제27조에서는 “공사업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 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아닌 전기용품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한국공업규격표시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한 자

라. 법 제49조에서는 다음에 열거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제2항(관련규정 앞에서 설명) 또는 제12조(관련규정 앞에서 설명)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8조에서는 “공사업자는 전기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

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한 자

※ 시행규칙 제15조(표지의 게시)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3) 법 제33조제1항(관련규정 앞에서 설명)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다음호에는 전기사업법의 별칙규정이 소개됩니다.

필 · 자 · 소 · 개

1936년 9월 10일 생

1962. 단국대 정외과 3년 수료

1984.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사회복지) 수료

1992. 서울대 행정대학원(국가정책과정) 수료

77. 6~86. 1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법제관(5급)
· 입법조사관(4급)

86. 1~88. 8 국회 사무처 의사국 경위과장

88. 8~93. 3 국회 동력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 입법심의관(3급)

93. 3~95. 3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입법심의관(2급)

95. 3~97. 12 국회 통상산업위원회 입법심의관
· 전문위원(2급)

현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이사

수상경력 근정포장 · 흥조근정훈장 수상